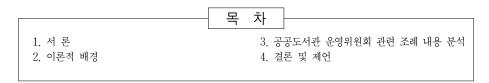


#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조례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Included in the Ordinance of Public Libraries in Chungcheong Province

심 효 정 (Hyojung Sim)\* 노 영 희 (Younghee Noh)\*\*



### 초 록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related ordinances, derive problems and implications, and based on this, suggest the contents and supplementation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ordinance. To this end, first, we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and the nature of the ordinance. Second,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ive areas: the status of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library steering committee, whether provisions related to library steering committee are included, composition content, composition method, function, conference and regulation enactment, and allowance payment.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mention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in charge of ordinances, a library steering committee,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library directors and library experts, hold regular meetings, disclose minutes, and reflect the results of committee deliberation. In addition, when enacting a standard ordinance items containing the name, nature and role, composition, meeting, sub-organization, rule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자치법규, 도서관법, 조례 Public Library, Library Steering Committee, Local Laws and Regulations, Library Act, Ordinances

<sup>\*</sup>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 (shicap75@hanmail.net / ISNI 0000 0004 5932 7729) (제1저자)

<sup>\*\*</sup>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2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8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8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93-117,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093

<sup>\*\*</sup>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50-60개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개관하여, 2021년 말 현재 1.208개관(공립 1.184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는 시민 생활의 편 의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지식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보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역할을 통해 공공도 서관의 사회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공공도서관 선언을 통해 공공도 서관의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 한 균등한 접근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의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에 굴복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 서관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 특정 법률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관점이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과 행정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도서관법」 제4장의2 제27조(설치 등)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 육성하여야 한 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 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

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네스코 공공도서 관 선언과 우리나라 「도서관법」 모두 공공도서 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설립 • 육성에 기여해 야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서 공공도서관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되 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 발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도서관 확충 과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점차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면서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23년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법』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항은 '공립 공공도서 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 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제3항은 '제2 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사무의 하나 인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법 규정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도서 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지역 도서관 조례 현황 을 파악한 후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

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지역을 충청지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기존에 연구된 사례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인구 수 대비 공공도서관 수와 소장자료가 많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비율과 정규직비율이 평균보다 높지만(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인구밀집지역이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분포되어 있어 도서관 서비스가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현주, 2021)는 점 등과 연구를 위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조례를 살펴보던 중 충청지역이 다양한 부서에서 도서관 관련조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알게 되어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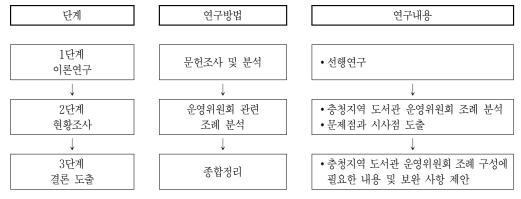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서관법」과 각 시· 군 도서관 운영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분석하기 위해 조례의 의의와 성격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이후 충청지역 도서관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조사해 그 중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의 내 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 및 절차 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분석 방법으로 공공도서관 조례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문헌들을 수집해서 조례의 의의와 성격,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만을 별도로 찾아보기 위해 자치법규정 보시스템에서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검색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조사·분석하였다. 이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조례의 의의와 성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림 1〉연구절차 및 내용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 한다(김남진, 김연태, 2018). 『지방자치법』 제28 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와 사무적 한계를 밝히고 있다.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 관한 구역에서만 효력 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규이고, 자치단체 의사에 기초하는 고유한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자치법규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주민자치의 고 유한 입법기능, 법률의 획일성에 대해 지역 특성 을 반영하는 기능, 법률의 결함이나 지체성을 보 완하는 기능 등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특 징으로 지적된다(정현태, 정미연, 2013).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위) 제2항 5호에 의하면, "도서관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 체의 종류별 시무배분 기준)와 동법 시행령 제10 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항 [별표 1]의 5에서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에서 분담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에는 공공도서 관과 문고의 설립운영 등이 각각 시 · 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도서관 행정체계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의 특수 한 상황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 제20조(교육감

관장사무)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 흥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교육장 의 분장사무의 범위) "7. 평생교육 등 교육・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해당 교육감의 관장사무 로 규정되고 있다.

### 2.2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서 계층적 구 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원 회"(정동열, 2021)로서 자문기관 또는 심의기 관의 역할을 수행한다(서혜란, 1995). 이진영 (2001)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역할로 의사결정, 부서간 업무조정, 참여를 통한 직원의 관심 자 극, 관리자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 적극적 홍보 를 제시하였다. 배창섭, 김영석(2009)은 효과적 인 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 방안에 대해 국내외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준비하 고, 공공도서관의 예산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 해하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공공도서관의 중요 성 및 사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대한민 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제정된 된 「도서관법」 (1963년 10월 28일 제정)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서 혜란, 1995). 1986년 5월 24일 경기도 부천시가 법제상 처음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 목적, 위원 의 구성, 위원의 업무, 수당 등에 관한 것이다. 1987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제3972호)이

운영조례 내용 중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만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관련 위

원회 활동과 도서관 운영조례에 관한 선행연구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다. 「도서관 법」제23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도서관운영위 원회 목적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동법 시 행령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의 직무,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하였다. 1991년 제정된 「도서관진흥법」과 동 법 시행령은 이전 「도서관법」과 비교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의 변화가 있다. 「도 서관진흥법」제23조 제2항은 도서관의 효율적 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 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 하였다. 동법 시행령에는 위원 위촉사항과 도서 관운영위원회 심의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후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을 그 대로 명시하였다. 2007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 30조 제3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 대통령령에서 규정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오주환, 김수진, 2013). 이에 따라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 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항과 제3항에서 운 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당위성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 2.3 선행연구

도서관 관련 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연구는 도서관정책위원회, 관종별 운영에 영향을 미치 는 위원회 등의 활동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조례 분석 연구는 그동안 공공도

먼저 도서관 관련 위원회 활동 등에 관한 연 구로, 이용남(2002)은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 원회의 변천 과정과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 분 석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배창섭, 김영석(2009)은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운영 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정책제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도서관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활동이 도서관의 중요성 과 사서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에 의미있는 도움을 주어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오주환, 김수진(2013)은 서울시구립공공도서관을 중심 으로 조례를 비롯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 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올바른 도서관운영위 원회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주환(2014)은 공공 도서관 거버넌스 사례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를 연구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 시민단체, 자원봉 사자, 도서관 직원의 구체적인 참여와 구성, 운 영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도서관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보일(2022)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현황 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

한 사항에 관해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를 제안하였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조례에 관한 연구로, 윤 혜영(2012)은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관련자치 법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관 련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등을 살 펴보고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함으 로써,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현태. 정미연(2013) 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도서관 관 련 조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도서관 관련 조례의 운영개선 방 안을 제안하였다. 김홍렬(2014)은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의 제정 현황을 조사하여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만호, 노영희, 장로사, 김 윤정(2020)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 · 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 을 도출한 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정 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 3.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분석

3.1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조례 제정 현황

충청지역은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등 모두 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국가도서 관통계시스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충청지역 에는 충청북도에는 54개, 충청남도에는 63개 등 모두 11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충청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먼저 충청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조례제정 상황을 파악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충청지역 도서관 관련 조례를 확인하였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 관도 지역사회에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 기에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조례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충청북도 괴산군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 립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이 없어 관련 조례도 없다. 괴산군을 제외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도서관 관련 조례는 모두 73개로 확인 되었다. 이 중 공공도서관 관련은 32개로 전체 43.8%를 차지한다. 작은도서관은 16개(21.9%), 독서진흥 조례는 9개(12.3%), 평생교육 조례는 7개(9.6%), 서점지원 관련 조례는 9개(12.3%) 다. 현재 제정된 조례 종류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도서관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전 체 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도서관이 담당하는 경 우는 10곳(충청북도 3곳, 충청남도 7곳, 38.5%)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 문화체육 담당부서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학습 부서가 담당 하는 곳도 4곳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부서에서 도 서관 조례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관련 조례 종류 현황

현재 국가 차원에서 도서관 업무가 분명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부 서가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 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담 당부서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문 업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 관련 조례의 경우에 보 다 명확하게 「도서관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 3.2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분석

「도서관법」제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조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 유무와 명칭과 함께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기 위해「도서관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2〉참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10곳(도서관이 없는 괴산군 제외)은 모두 조례에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청남도 15곳 중 2곳 (계룡시와 홍성군)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룡시는 「계룡시 공 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8조(위탁 도서) 제1항에서 '주민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 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만 조례 어디에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홍성군도 운영위 원회에 관한 조항이 없다. 「도서관법」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 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되, 관장은 옥천군 평생학습원장 이 된다고 하고, 제27조(설치) ① 도서관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0조 제2 항에 따라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 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 흥 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조항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제30 조 제1항에서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

〈표 2〉 충청지역 도서관 관련 조례 중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자치단체명	위원회 관련 조항 유무	도서관법 조항 명시	운영위원회 명칭	비고
	청주시	0	X	청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청주기적)	0	X	운영위원회	
	충주시	0	X	충주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제천시	0	X	도서관운영위원회	
	(제천기적)	0	X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보은군	0	0	도서관운영위원회	
충청 북도	옥천군	0	0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7조제2항에서 옥천군평생 학습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함
	영동군	0	0	영동군도서관운영위원회	
	증평군	0	X	증평군도서관운영위원회	
	진천군	0	X	진천군도서관운영위원회	
	괴산군	-	-		
	음성군	0	0	음성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단양군	0	X	단양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천안시	0	0	천안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천안아산상생협력 센터도서관)	0	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운영 위원회	
	공주시	0	X	도서관운영위원회	
	보령시	0	0	보령시도서관운영위원회	
	(주산도서관)	0	X	위원회	
	아산시	0	X	아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	
	서산시	0	X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えら	논산시	0	X	도서관운영위원회	
충청 남도	계룡시	X	X	-	제8조(위탁도서)조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언급
	당진시	0	0	당진시도서관운영위원회	
	금산군	0	X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	
	부여군	0	X	부여군도서관운영위원회	
	서천군	0	X	장항농어촌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청양군	0	X	청양군도서관운영위원회	
	홍성군	X	X	-	
	예산군	0	0	도서관운영위원회	
	태안군	0	0	태안군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 ○			0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 🔾			0	도서관운영위원회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으로 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다른 지방 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 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 에서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다른 체육관광부 등은 이러한 현황을 확인해서 조

례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적의도서관 관련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 청주시와 제천시. 천안아산상생협력 센터 도서관 관련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한 천 안시와 아산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한 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는 각각의 조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을 두고 있다. 다만 보령시의 「주산도서관 및 문 화의 집 설치 · 운영 조례, 제21조(위원회 설치) 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 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회 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용 개정 이 필요하다

### 3.3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 분석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수와 위촉자, 위 원장 선임 방식, 임기와 연임 가능 여부와 연임 시 횟수 제한 여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위원수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4곳과 충청남 도 6곳 등 10곳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규정 되어 있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각 2곳은 단순 하게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3곳 중 14곳(약 61%)이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는 7명 이하에서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 수 를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각각 7명 이상 12명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지방자 치단체장(시장이나 군수)이지만 논산시와 천 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의 경우는 위촉하는 사람 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청주기적의도서 관은 시장이 위촉하지만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함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청 두 곳은 모두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영동군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증평군은 군수가, 진천군은 부군수, 음성군은 행정복지국장이 맡도록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문화도 서관본부장이 위원장을, 공공도서관장이 부위 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는 평생학 습문화센터장, 금산군은 부군수, 태안군은 교육 체육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보령시 주산도서 관 및 문화의집 경우에는 주산면장이 위원장으 로 규정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충청남도 논산시와 금산군이 3년이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모 두 2년이다. 위원의 연임에 관해서는 다수가 연 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옥천 군, 음성군, 단양군과 충청남도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등 모두 6곳은 연임에 대해 특별한 언급 을 하고 있지 않다.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경 우 대부분은 횟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 나, 충청북도 진천군은 1회, 충청남도 천안시는 2회, 보령시와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은 각각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가운데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1회 연임을 규정 하고 있다. 제천기적의도서관 경우에는 위원 임기가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표 3〉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수 등 현황

				0] 0] 7] /H 0] 0] 7]	임기 및 연임			
	자치단체명	위원수	위촉자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방식	임기 (년)	연임 여부	연임 횟수	
	청주시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2	0	X	
	(청주기적)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3	0	X	
	충주시	10-15명 이내	시장	호선	2	0	X	
	제천시	10-15명 이내	시장	호선	2	0	X	
	(제천기적)	10-15명 이내	시장/수탁기관	호선	3	0	X	
<b>ネ</b> シ	보은군	15명 이내	군수	오선	2	0	X	
충청 북도	옥천군	12명 내외	군수	군수	2	X	X	
47	영동군	8-15명 이내	군수	담당국장	2	0	X	
	증평군	15명 이내	군수	군수	2	0	X	
	진천군	10-15명 이내	군수	부군수	2	0	1	
	괴산군	-	-	-	-	-	-	
	음성군	10명 이내	군수	행정복지국장	2	X	X	
	단양군	20명 이내	군수	호선	2	X	X	
	천안시	10-15명 이내	시장	문화도서관본부장 (부위원장 공공도서관장)	2	0	2회	
	(천안아산상생협력 센터 도서관)	8인-12인 이하	별도 언급 없음	호선	2	0	2회	
	공주시	10-15명 이내	시장	호선	2	X	X	
	보령시	15명 이내	시장	호선	2	0	1회	
	(주산도서관)	15명 이내	시장	주산면장	2	0	1회	
	아산시	10-15명 이내	시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	0	1회	
	서산시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2	0	X	
충청	논산시	10-15명 이하	별도 언급 없음	호선	3	0	1회	
남도	계룡시	-	-	-	-	-	-	
	당진시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2	0	X	
	금산군	15명 이내	군수	부군수	3	0	X	
	부여군	9명 이내	군수	호선	2	0	1회	
	서천군	7명 이하	군수	호선	2	X	X	
	청양군	10명 이내	군수	호선	2	X	X	
	홍성군	-	-	-	-	-	-	
	예산군	10명 이내	군수	호선	2	0	X	
	태안군	10명 이내	군수	교육체육과장	2	0	X	
	충청북도교육청	7-12명 이하	관장	호선	2	0	X	
	충청남도교육청	7-12명 이하	관장	호선	2	0	1회	

# 3.4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운영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위 원회 성격을 규정하고 실제 활동의 성패를 좌 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조례는 위원을 구

성함에 보통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 규정 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위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 〈표 4〉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종류

			당연직	위촉직						
	자치단체명	관장	<u></u> 가장 시공무원, 관리부서장		관 교육/문화 주민다 가 관계전문가 이용. 시민단		시·군의원	기타		
	청주시	01)		0	0	0	O (2명)			
	(청주기적)		관리부서의 장	0	0	0				
	충주시		공무원 <sup>1)</sup>		0	0	0			
	제천시	O <sup>1)</sup>			0	0				
	(제천기적)		제천시립도서관장	0	0	0				
	보은군		부군수(위원장), 행정과장, 주민복 지과장, 문화관광과장		0			0		
충청 북도	옥천군 <sup>2)</sup>		군수(위원장)		옥천군 평생 학습관장		0	군/평생교육기관추천 5급 이상 공무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영동군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위원장), 가 족행복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 과장	0	0	0				
	증평군		군수(위원장), 미래기획실장, 사회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0	0	0				
	진천군		부군수(위원장), 공무원 <sup>1)</sup>	0	0	0	0			
	괴산군	-	-	-	-	-	-	-		
	음성군	$O^{1)}$	행정복지국장(위원장)		0	0				
	단양군	0		0	0	0				
	천안시	0	문화도서관본부장(위원장)	0	0	0	0			
	(천안아산상생협		   천안시와 이산시 도서관 업무 담당	0	0	0	천안시와 아			
	력센터 도서관) ○		과장급 공무원	천안시외	<b>아산시 같은</b>	수로 구성	산시 의회 각 2명			
	공주시		평생교육과장 <sup>1)</sup>		0					
	보령시		교육체육과장 <sup>1)</sup>	0	0		0	0		
	(주산도서관)		주산면장(위원장), 시 공무원 <sup>1)</sup>		0					
	아산시	O <sup>1)</sup>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위원장), 평생학습관장, 교육청소년과장, 아 산교육청도서관장 <sup>1)</sup>		0	0	0			
3.5)	서산시	O <sup>1)</sup>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 갖춘 자		
충청 남도	논산시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	0	0	0	0			
	계룡시	-	-	-	-	-	-	-		
	당진시			0	0	0				
	금산군		부군수(위원장), 교육가족과장, 금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금산문화 원 사무국장, 의회추천 의원(1명)		0	0				
	부여군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sup>1)</sup>	0	0	0				
	서천군		문화진흥과장	0	0		0			
	청양군		공무원 <sup>1)</sup>		0	0				
	홍성군	-	-	-	-	-	-	-		
	예산군		도서관 업무 관계 공무원 <sup>1)</sup>	0	0	0				
	태안군		교육체육과장(위원장)		0	0				
	충청북도교육청	O <sup>1)</sup>			0	0				
	충청남도교육청	0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sup>1)</sup> 조례에서 당연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도서관장이나 관련 공무원을 언급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2) 옥천군의 경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옥천군 평생학습진홍 조례」를 준용하고 있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실제 조례에서 도서관 관장을 당연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천안시(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포함), 충청남도교육청 등 단 3곳뿐이다. 당연직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장을 위원 중하나로 명시한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청남도 아산시와 서산시, 충청북도교육청 등 6곳이다. 따라서 관장을 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으로 규정한 곳은 모두 9곳에 그치고 있다. 관장이 위원이 아닐 경우 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장과 함께 위원회의 논의나 의결 사항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위원 회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군 수나 부군수 등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 에도 도서관 행정과 관련한 부서의 장을 당연 직 또는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충청북 도 청주시(기적의도서관 포함), 충주시, 충청 남도 아산시의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보령시의 주산도서관,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은 특정한 직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관 리부서의 장이나 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단순히 공무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특정 한 조직이나 직위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이나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 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직위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서나 직위 공무원이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조직이나 직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례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관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고 조직개편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촉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 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없 거나 내용이 없는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계룡시와 홍성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에서는 교육과 문화부문 관계자 또는 전문가는 모두 위촉직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자의 참여를 보 장하고 있는 경우는 충청북도 청주시(청주기적 의도서관 포함), 제천시의 기적의도서관, 영동 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포함),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뿐이다. 이 경우 관장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문 가가 참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보완이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도서관,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의 경우는 관장이 위원회에 참 여하지 않으면서도 도서관 전문가나 관계자 참 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 도서관 운 영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있어 도서관의 특성 이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도서관 관장은 물론 도서관 부문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명

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대표나 이용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 하는 것도 민관협치 차원에서 이용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기적의도서관 포함), 충주시, 제천시(기적의도서관 포함), 영 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8곳,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아산생생협력센터 도서 관 포함),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 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등 9곳. 그리고 충청 북도교육청 등 18곳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도 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참여를 확실 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시나 군 의회 의원의 참여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충청북도 청주시(2명으로 명시), 충주시, 옥천군, 진천군 등 4곳, 충청남도 천안 시(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경우에는 천 안시와 아산시 의회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참여토록 명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서천 군 등 5곳 등 모두 9곳이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 고 있다. 시나 군 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명 시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두 곳 은 향후 위원회에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 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위원 구성에 있어 특별한 사항을 명시 한 곳이 있다. 옥천군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도록 한 옥천군 평생학습 협의회는 옥천군 평생학습관장과 군 또는 평생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공모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6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8명(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각각 명시)을 동년 4월 공모하였다. 그런데 공 모 내용에서 협의회 기능을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만 명기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서의 역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구성 한 협의회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옥천군 관내에서 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람의 위원회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점은 참 고할만하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운영위원회 경우에는 도서관계와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두 시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위원회 위원수가 12명 이내인 상황에서 관장과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 두 시의 의회 의원 각 2명씩 총 4명 등 이미 7명 이상이 당연 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실제 관련 부문 관계자는 최대 5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칫 위 원회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경우에는 위 원 구성에서 단순하게 관장과 도서관 운영에 관 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충청북 도 충주시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장이 추 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중 문 화와 교육계 인사와 이용자가 전체 위원의 과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 은군의 경우에도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 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에는 「양성 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 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양성평 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 경우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 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 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시 · 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위원회 구성 시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굳이 충주시나 논산시와 같이 조례에 별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위 「도서관법」 제30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의 해촉 관련한 조항과 위원회 운영을 돕는 간사에 관한 내용도 대부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증평

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 충청남도 천 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등 8곳 등 모두 15곳으로, 전체 23곳 중 65%를 차지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경우에는 해촉 조항과 함께 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촉의 사유는 본인의 사임과 함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대체로 유사하다. 해촉 관련 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간사에 대해서도 규정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옥천군과 청주시와 제 천시 기적의도서관 경우에만 별도 언급이 없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대체로 도서관에 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일을 맡도록 하 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 경우에는 간사(도서 관업무담당 팀장)와 서기(업무담당자)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하고, 청양군도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금산군은 평생학습팀장, 서천군은 문화정 책팀장이. 보령시 주산도서관은 주산면 부면장 이 간사를 맡는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충 청남도 공주시 경우에는 위원장이 도서관 직원 중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업무는 도서관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는 간 사의 일은 도서관 직원이 맡도록 하는 방향으 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5 운영위원회 기능

「도서관법」제30조 제2항에서 공립 공공도 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이유는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다. 따라서 관련 조례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 충청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

'해당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도서관에 두도록 한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은 〈표 5〉와 같다. 조례마다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10가 지로 구분해 정리 분석하였다.

〈표 5〉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기능	기능									
	자치단체명		도서관 운영	운영개 선사항	자료수 집 등	독서문 화진흥	독서, 평생 교육등 지원	타 기관 업무협력	자료페기, 제적 등	위탁도 서 심의	도서관 후원 <sup>1)</sup>	기타
	청주시	6	0	0	0	0	0	0				
	(청주기적)	5	0									O (관장 추천 등)
	충주시	7	0	0	0		0	0	0		0	
	제천시	7	0	0	0	0	0	0			0	
	(제천기적)	6	0	0		0	0	0			0	0
충청	보은군	6	0				0	0	0		0	0
북도	옥천군	6	0	0		0	0		0		0	
	영동군	5	0			0		0	0			0
	증평군	6	0				0	0	0		0	0
	진천군	8	0	0	0	0	0	0			0	0
	괴산군	-	-	-	-	-	-	-	-	-	-	-
	음성군	8	0	0	0	0	0	0			0	0
	단양군	6	0			0	0	0				0
	천안시	7	0	0	0		0		0	0	0	0
	(천안아산상생협 력센터도서관)	7	0	0	0	0			0	0	0	0
	공주시	7	0	0	0	0	0	0			0	
	보령시	7	0	0	0	0	0	0				0
	(주산도서관)	7	0	0	0	0		0		0		0
	아산시	5	0	0			0		0			0
	서산시	8	0	0	0	0	0	0			0	
충청	논산시	6	0	0	0		0	0				0
남도	계룡시	-	-	-	-	-	-	-	-	0	-	-
	당진시	8	0	0	0	0	0	0	0		0	
	금산군	6	0	0	0	0		0			0	
	부여군	7	0	0	0	0	0	0				0
	서천군	7	0	0	0	0		0				0
	청양군	7	0	0	0	0	0	0			0	
	홍성군	-	-	-	-	-	-	-	-	-	-	-
	예산군	5	0	0	0		0				0	0
	태안군	7	0	0	0	0	0	0			0	
충청북도교육청 7		7	0	0	0	0	0	0				0
충청남도교육청		7	0	0	0	0	0	0				0

<sup>1)</sup> 도서관 후원의 경우○는 명확하게 '도서관 후원'을, ◎는 '기타 도서관 후원'이라고 명시한 경우임.

조례에 규정된 기능이나 심의사항의 개수를 살펴보면 도서관이 없거나 운영위원회 관련 조 례가 없는 3곳을 제외한 29곳(개별 도서관 조례 와 교육청 포함) 중 13곳(44.8%)이 7가지를 명 시하고 있다. 그 외 6가지인 곳이 8곳(27.6%), 5가지와 8가지인 곳은 각각 4곳(13.8%)이다.

우선 29곳 모두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에 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충청 북도 청주기적의도서관과 보은군, 영동군, 증평 군, 단양군을 제외한 24곳이 도서관 운영에 관 한 기본사항 외에도 별도로 도서관 운영개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 기본사항 과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이 크게 다른 것인지 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로 명시한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조 항목이 조례에 명시된 경우는 29곳 중 23곳(79.3%)이다. 명시 하지 않은 6곳(충청북도 청주기적의도서관, 옥천 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 관, 아산시, 예산군)은 다른 문화시설과의 협조 또는 협력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는 자료의 수집, 구성, 관리 관련 사항(22곳), 독서문화진흥 관련 사항(23곳), 독서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23곳), 자료 폐기나 제적 등에 관한 사항(9곳), 위탁도서 심의사항(4곳),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17곳) 등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다.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둔 조례도 18곳이다.

자료의 수집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곳 중 서산시 경우는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과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나열하 고 있다. 자료의 선정과 구성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곳 중 충청북도 진천군은 "'진천의 책' 선정 등"이라고 보다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독서진흥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단양군경우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독서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과 '독서문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한 곳이 17곳이다. '도서관 후원'이라고 명확하 게 제시한 곳이 7곳이고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곳은 10곳이다. 도서관 후 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체 로 현금이나 물품 등의 기부는 포함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제5조(국가 등 기부 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차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 러나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9조(금 전 등의 기부)에서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 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즉 공립 공공도서관은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 금품법」에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운영위 원회에서 도서관 후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 록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부하고자 하는 개 인이나 단체 등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서 관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후원이나 기부와 관련 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운영위원회가 민관협치 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후원이나 기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위탁도서와 관련한 사항을 다룬 곳은 충청남 도 천안시(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포 함)와 보령시 주산도서관, 계룡시 등 4곳이다. 이 중 계룡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위탁도서) 에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는 명시하고 있지만, 심의를 할 도서관운영위원회 의 구성이나 기능 등에 관해서는 반영하지 않 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이나 단체 등으 로부터 도서를 위탁받아 이를 활용하는 것은 도서관 자료 선정이나 구성에 관한 사항의 하 나로 처리 가능하기에 이 사항을 도서관운영위 원회의 규정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충청북도 충주시 등 9곳은 자료의 폐기와 제 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 다. 이는 현재 도서관자료의 폐기나 제적의 경 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2](시행 2021.6.23.)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해 서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도서관운 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해 폐기 나 제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의 하나로 도서관 자료 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이 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도서관법 시행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기타 사항에서는 우선 청주기적의도서관 경 우 도서관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관장의 임명 추천(면직 포함)에 관한 사항, 사 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예산 및 결 산에 관한 사항,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 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별도로 관장의 추천 조항을 두고 추천할 수 있는 관장의 조건 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은 위원회가 복수로 추 천한 자 중에서 1명을 관장으로 임명해야 하고, 관장을 해임하거나 면직,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 천시 기적의도서관 경우에는 2018년 5월 11일 조례 개정 시 위원회 기능 중 '관장의 임명 추천 (면직 포함)과 연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였다. 현재에는 수탁기관이 관장을 공모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3.6 운영위원회 회의와 규정 제정. 수당 지급 관련 분석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 영이나 발전, 개선 등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통 해 도서관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실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회의 소집의 요건에 있어서는 모든 지

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관 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에는 시 장이나 군수도 소집 할 수 있고, 위원의 1/2 또 는 1/3의 소집요구에 따라서도 소집이 가능하 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나 도서관은 13곳으로 전체 29곳 중 44.8%에 그치고 있다. 보다 적극 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회 의 소집 요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회의 방식에 있어 정기회의를 명확하게 규정 한 곳은 4곳(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충청남 도 서산시, 당진시)뿐이다. 나머지는 정기회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서면회의에 대해서도 충청북도 청주시 등 8곳만 명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만약의 상황 이 발생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 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 한 상황에서는 서면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자칫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운영 되지 않도록 서면회의를 허용하는 조건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도 일부(16곳, 55.2%) 만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 주산도서관 경우에 는 별도 조항으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제3조(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서 적극 공개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회의 록 작성 및 공개)에서 「정보공개법」제9조 제1 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 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공공기 관이기에 국민, 특히 이용자들이 도서관 운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적극 공개가 필요하다. 경기도 용인시의 사립 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은 홈페이지에 '2022년 느티나 무도서관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다.

회의의 성립과 의결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충청북도 제천시 는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 적인 회의 성립과 의결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단순 자문위원회 성격 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심의 와 의결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이끄 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논 의사항이 도서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충청북도 충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등 4곳이 위원회 심의사항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 방자치단체장(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한 곳도 있다. 충주시는 중대한 사 안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 이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천시는 도서관장이 심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

고토록 하고 있고, 제천기적의도서관은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 천군 경우에는 충주시와 같이 중대사안이나 예 산 수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라 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관장이 보고하도록, 아산시는 주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운 영과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위상을 명 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며, 심의사항을 실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충 청지역 도서관 조례에서는 청주시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 육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 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자율적 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스스로 운영세칙 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29곳 중 21곳(77.4%) 이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수 당의 지급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다른 규정 등 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운영위원 회 관련 내용에 포함하면 위원회 운영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 3.7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서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 서관 행정이나 조례와 같은 법적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가 도서관 또는 도서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 체 26곳 중 10곳(38.5%)에 그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은 가장 많은 수의 문화기반시설이고 계 속해서 신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업무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의 하나이고 대통 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책 기획단이라는 전담부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서관 업무 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 로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운영 조례 분석 결과 충청지역에서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제 외한 25곳 중 23곳의 조례에서 도서관운영위원 회와 관련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청 남도 계룡시와 홍성군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즉각적인 조례 개정 이 필요하다. 또한 충청북도 옥천군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기는 하되 그 역할은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 서관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대 체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원수를 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수는 적절하게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연령과 전문분야 관계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이 하도록 해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들의 책임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이나 특정 기관의 장이 맡도록 한 곳도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기는 대 부분 2년이나, 연임 여부나 연임 횟수가 불명확 한 경우도 많다. 위원회의 지속성을 위해 위원 의 연임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위원 구성에 있어 관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곳은 3곳. 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 곳도 9곳뿐인데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서관 관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으 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교육이나 문화부문 전문가 또는 관계자는 거의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 서관 전문가 참여의 경우에는 충분히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 부문 전문 가나 관계자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 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조례에서 『양 성평등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바 람직할 것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데 지역이나 도서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 만 다른 법률, 특히 「기부금품법」과 관련한 도 서관 기부와 관련한 사항이나 「도서관법 시행 령」과 관련된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 한 사항 등은 상위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대체로 정기회의를 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기별로 정기적 회의를 소집해 도서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위원회 소집 또한 위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위원의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면 개 최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록을 명확하게 작성 하고 이를 공개하여 위원회의 책무성을 높이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결과는 도서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도 필요하다.

# 4.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2023년부터는 정부가 담당해 온 도서 관 건립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의 자치와 분권은 더욱 확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국 의 공공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자료종 합목이나 국가상호대차 서비스(책바다)나 회 원권 하나로 전국 도서관의 대출서비스를 이용 하는 책이음,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등을 통해 도서관 서비 스가 전국화하고 있고, 건립 타당성 조사나 등 록제 등도 새롭게 실행될 예정이다.

분권과 자치가 강화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국적인 통합과 연결,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에서 도서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하고 지역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운영 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아직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중요 성이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구성이나 운영방 식 등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 하다. 또한 상위법과 조례, 관련 법률 등과의 원 활한 체계 구축 상황도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의 정비를 통한 도서관운영위원 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 록 한 「도서관법」 취지를 살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 제정될 수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경 우에는 법령에서는 설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을 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 체나 교육청 별로 실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에 도서관운영위원 회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야 할 부분은 비워두거나 여러 개의 안을 제시해 서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서관 운영 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은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한 표준조례안 을 제정하게 된다면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당연직과 위촉직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범위, 위원장 선임과 간사 등에 관한 규정, 해촉 관련 규정 등 포함), 회의(최소 개최 횟수, 회의 록 작성 및 활용 등의 사항), 하위 조직(자료선 정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이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칙 제정에 관한 사 항, 회의비 사항 등에 관해 지방분권이나 자치 라는 원칙과 충돌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과 운 영에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관장과 지방자치 단체 핵심 부서의 장이나 공무원 등은 당연직 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 구 성에 있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 의 절반 이상은 이용자나 시민단체,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모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반영함으로써 민 관협치의 핵심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또한 임기마다 위촉직 위원의 절반 또 는 1/3 이상을 교체하면 활동의 연계성을 유지 하면서도 신규 위원을 영입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필요한 분과위원 회나 실무위원회 같은 하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도서관 현장에서 수서 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부 압력이 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표출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서나 서비스 담 당 사서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도서관 차원. 즉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수서의 자율권과 관 련한 적극적 논의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도서관 자료수집과 장서 구성에 관해서 보다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산 하에, 또는 별도로 자료선정위원회 등을 설치 해 도서관의 자료 선정과 이용 과정에서 특별 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9조 (자료선정위원회)와 도봉구의 『서울특별시 도 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6조 제4항 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분석을 통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충청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만을 분 석함으로써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 점과 문헌분석연구만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 현황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다른 지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분석 연구와 함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2.6.14).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h

고현주 (2021). 교육도서관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공간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2.7.4). 출처: https://www.libsta.go.kr/main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김남진, 김연태 (2018). 行政法Ⅱ. 경기: 법문사.

김보일 (202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175-199.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175

김홍렬 (2014).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자치법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17-138.

김희곤 (2019).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9(2), 3-44. http://dx.doi.org/10.21333/lglj.2019.19.2.001

느티나무도서관 (2022.6.28). 2022년 느티나무도서관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출처: http://www.neutinamu.org/page/s2/s4.php?cf=view&seq=10921&pg=1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 서('13년 실적).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8769호.

- 배창섭, 김영석 (2009). 도서관전문가의 관련위원회 참여와 도서관 정책제언 활동을 통한 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287-309.
- 서혜란 (1995). 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현황과 활성화 전략. 圖書館學論集, 22, 171-203.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 오주환, 김수진 (2013).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2013년도 제20회 학술대회 논문집, 143-150.
- 옥천군 (2021.4.16). 옥천군평생학습원 공고 제2021-19호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출처: https://www.oc.go.kr/edulife/selectBbsNttView.do?key=1533&bbsNo=111&nttNo=125139
- 윤혜영 (2012).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분석: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81-300
- 이용남 (2003).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동분석과 활성화 방안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69-293
- 이진영 (2001). 공공도서관 운영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정동열 (2021). 개정4판 도서관경영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현대, 정미연 (2013).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05-122.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미래 정책개발 연구. 충청남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18841호.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23호.
- 최만호, 노영희, 장로사, 김윤정 (2020).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 서관·정보학회지, 51(2), 187-212.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187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2.6.15). 출처: http://www.elis.go.kr/
- IFLA, UNESCO (1994). Public Library Manifesto.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86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Section No14839.

Bae, Chang-Seob & Kim, Young-Seo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by the library professionals' participation on library related committees and advoca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287-309.

Cho, Manho, Noh, Younghee, Chang, Rosa, & Kim, Yoonjeong (2020). A study on the analysis and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mall library ordinance in Gyeonggi-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87-212.

http://dx.doi.org/10.16981/kliss.51.2.202006.187

Chung-A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2018). Chungcheongnam-do Public Library Future Policy Development Research. Chungcheongnam-do.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Section No18769.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Section No.18099.

Gho, Hyeon-Ju (2021).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pace Operation Considering Paradigm Change in Education Library: Focused on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Master's thesis, Major in Educa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g, Dong-Yeol (2021). 4th Edition Library Management Theory.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Joung, Hyuntae & Jung, Miyeun (2013).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05-122.

Kim, Bo Il (2022).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175-199.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1.175

Kim, Hee-gon (2019).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focusing on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19(2), 3-44. http://dx.doi.org/10.21333/lglj.2019.19.2.001

Kim, Hong-Ryul (2014).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17-138.

Kim, Namjin & Kim, Yeon-tae (2018). Administrative Law 2. Gyeonggio: Beopmunsa

Lee, Jinyoung (2001). Public Library Operation Theory. Seoul: Asia Culture History.

Lee, Yong-Nam (2003). A study on activation scheme of library advisory committe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69-293.

Library Law. Section No18763.

Local Autonomy Act Enforcement Decree. Section No32223.

Local Autonomy Act. Section No18661.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Section No. 1884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2022,6,15). Available: http://www.elis.go.kr/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Homepage (2022.7.4). Available: https://www.libsta.go.kr/main
- Neutinamu Libary (2022,6,28), 2022 Neutinamu Libary 2nd Quarter Library Committee proceedings. Available: http://www.neutinamu.org/page/s2/s4.php?cf=view&seq=10921&pg=1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ection No17690.
- Oh, Joo-hwan & Kim, Soo-jin (2013). A study on public library committees.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Society Proceedings of the 2013 20th Academic Conference, 143-150.
- Okcheon-gun (2021,4,16). Okcheon-gun Lifelong Learning Center Notice No. 2021-19 Okcheon-gun Lifelong Learning Council Public Recruitment Notice. Available: https://www.oc.go.kr/edulife/selectBbsNttView.do?key=1533&bbsNo=111&nttNo=125139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Press Release (2022.6.14). Available: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h
-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Information Policy (2014). National Library Operation Evaluation Result Report (2013 performance).
- Suh, Hye-Ran (1995). Resident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 171-203.
- Yoon, Hye-Young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81-300.